

< 샘터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른다.

1. 구체적인 기간 및 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3.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이 결정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급여제공계약서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5. 위의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며 시설 정원 변경,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2절, 31조 주·야간보호급여비용에 의거한 이용비용 및 비급여 비용<첨부 1. 참조>에 준하며,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시설에서 명시한 등급외자 이용료로 산정한다.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1. 비급여 대상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로 실제 소용비용만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는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납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이용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3.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4.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1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17.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또는 계약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를 유선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 타 이용자 또는 직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 특별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 이 외에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⑥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 ⑦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⑧ **계약서 부분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부분 간인으로 발부 여부를 확인한다.

2024년 샘터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

1.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 원 / 1일)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등외자인 경우	8시간~10시간 기준 1일 30,000원으로 100% 본인부담(식간식비 별도)					

- * 미이용수가: 일정 등록이 되었으나 보호자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수가의 50% 청구.
- * 공휴일수가: 일요일, 공휴일 이용 시 수가의 30% 가산 청구.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본인부담 비율
일반	15%
차상위 경감① (간강보험료 중위소득 순위 25% 초과 ~ 50% 이하)	9%
차상위 경감 대상자②, 의료급여수급권자(간강보험료 중위소득 순위 25% 이하)	6%
기초수급권자	0%

3. 비급여 항목 내역

- 식재료비 및 간식비 : 1일 6,000원
1회 당 2,500원(1일 2식 제공 총 5,000원)/ 간식 1회 당 500원(1일 2회 제공 총 1,000원)

4. 1개월 이용 시 본인부담금 총금액 예시

본인 부담 등급	일반(15%)		경감① (9%)		경감② (6%)	
	~금(22)	월~토(26일)	월~금(22일)	월~토(26일)	월~금(22일)	월~토(26일)
4등급	314,190원	371,310원	241,310원	285,190원	204,870원	242,120원
5등급	309,010원	365,190원	238,200원	281,510원	202,800원	239,670원

- * 매월 이용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동되며 병원진료비, 약제비 또는 기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